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8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5년 9월 5일)
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업무과장 박 명 호)

제안이유

-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따라 전용 공업용수의 사용량 요금을 인상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전용 공업용수의 사용량 요금을 m³당 200원에서 m³당 220원으로 인상함.
(안 별표 1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 200원에서 220원 인상은 10%를 인상하게 되는데 납부자의 저항은 없을 것인지 ?</p> <p>○ 원수의 단가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?</p>	<p>○ 전용 공업용수는 기업체에서 원수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활용 기업에는 저항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겠음.</p> <p>○ 금년 1월 8.3% 인상되었으나 우리시는 그동안 인상하지 않은 비율까지 포함하여 금번에 인상하게 되었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27호
의결 년월일	2005. 9. 9 (제121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8. 25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따라 전용공업용수의 사용량 요금을 인상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전용공업용수의 사용량 요금을 m³당 200원에서 m³당 220원으로 인상함.(안 별표 1)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” 를 “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중 “수도법” 을 “「수도법」” 으로 하고, 제6조중 “부천시수도급수조례” 를 “「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」” 로 한다.

별표 1중 사용량요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 용 량	요 금
m ³ 당	220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 사용료요율 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(m ³ /원)				(m ³ /원)			
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		사용량요금		----- -----		-----	
계량기구경별	요금	사용량	요금	----- -----	-----	-----	-----
13m/m	620	m ³ 당	200	-----	-----	m ³ 당	220
20m/m	1,300			-----	-----		
25m/m	2,010			-----	-----		
32m/m	3,590			-----	-----		
40m/m	4,900			-----	-----		
50m/m	8,590			-----	-----		
75m/m	16,270			-----	-----		
100m/m	27,120			-----	-----		
150m/m	60,220			-----	-----		
200m/m	97,000			-----	-----		
250m/m	143,870			-----	-----		
300m/m	200,830			-----	-----		
350m/m	251,580			-----	-----		
400m/m	282,910			-----	-----		